

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/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8.
제출자 : 이형근 의원 외 12인

개정이유

- 2011. 6. 30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, 제68조로 개정(안 제1조)
- 나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로 개정 (안 제5조)
- 다.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정비(안 제5조 제1호, 제2호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발췌서 1부.
- 소방방재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조례 작성(안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74조, 제75조의 규정에 의거” 을 “제67조,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74조, 제75조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호에 의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” 을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호부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 - 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사업
 - 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- 라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- 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2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

제5조 제3호부터 제5호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4조,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67조, 제68조 및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4조,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금의 용도)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호에 의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</p>	<p>제5조(기금의 용도)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.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사업 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읊자 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 2.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</p>
<p>2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</p>	
<p>3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</p>	<삭 제>
<p>4. 재난관련 장비 구입</p>	<삭 제>
<p>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</p>	<삭 제>
<p>제6조(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읊자 등)①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의 규모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내로 한다.</p>	<p>제6조(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읊자 등)① - 제74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
②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 비용의 웅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, 웅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웅자기금 규모와 웅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

② - 제74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-----

-----.